

---

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

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360호)

---

2023. 8. 2

# 1. 개정안 주요 내용

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상생협력법)」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('23.6.23~8.2)

<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>

조문	주요내용
제14조 제1항	-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규정
제14조 제3항 및 제4항	- 연동 약정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
제27조 제3항	-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 위임
별표3	-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규정
별표4	-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

## 2. 개정안에 대한 의견

### ① 별표3 벌점 부과기준

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시 벌점을 부과(최대 5.1점) 하여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심각한 제재를 받음

○ 중소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근거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,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\*도 가속행위로 이뤄져 과잉·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음

\* 국가계약법 제27조, 지방계약법 제31조,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2항

- 위탁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, 그 파급효과가 위탁기업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중소 수탁기업의 수주기회 박탈 등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음

○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 취지에 맞게 기업 규제나 제재보다는 위·수탁기업이 상생하며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

- 납품대금 연동제가 첫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벌점 부과 등 처벌 위주의 제재보다는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기업 확대 방안 강구,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

⇒ (건의) 벌점 부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확대

-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벌점 부과 유예
-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 벌점 경감 확대(2점→3점)

\* (유사입법례)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시 벌점 3점 경감

## ②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

□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기준\*은 법제처의 「법령 입안 심사 기준(22.12월)」 및 「과태료 금액지침(19.2월)」 보다 높게 책정되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

\* 1차 3천만원, 2차 4천만원, 3차 5천만원

- 「과태료 금액지침」 상 과태료 상한은 원칙적으로 1천만원 이하에서 설정하되, 그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천만원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함
- 과태료 부과금액(위반 횟수별 가중처분의 경우 1차 위반 기준)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% 이상에서 설정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%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함

### <과태료 부과금액 설정범위>

#### 부과금액의 설정범위

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% 이상에서 설정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% 이상에서 설정해야 한다.

- 법률취지를 존중하려면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
- 법률취지를 존중하고, 과태료 상한액은 보통 절반씩 줄어드는(예: 1천만원-5백만원-3백만원) 방식으로 세분되는 점을 반영하여 과태료 상한액의 50% 이상에서 부과금액(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)을 설정하며,
- 주체·기간·경중 등에 따른 차등, 정책적 고려 등의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% 이상에서 설정

\* 출처 : 법제처, 과태료 금액 지침, '19.2월

○ 또한 동법 제43조 제2항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1천5백만원, 2차 2천5백만원, 3차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법 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합리

※ 법제연구원(2017) 연구\*에 의하면, 차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경우 1차 부과액은 법정 부과금액의 20~30%를 부과하고, 차수에 따라 의무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1 : 1.5 : 2(또는 3),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: 2 : 4 비율의 부과를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

\* 김현희·강문수·나채준, 「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」, 한국법제연구원, 2017

⇒ (건 의)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

	1차	2차	3차
개정안	3천만원	4천만원	5천만원
건 의 (1안)	1천만원	2천5백만원	5천만원
(2안)	1천5백만원	2천5백만원	5천만원

### 3. 기타 의견

□ (계도기간 연장) 연동제 도입 초기 제도 안착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검토 필요

⇒ (건 의) '23.10.4~12.31(3개월) → '23.10.4~'24.3.31(6개월)

□ (미연동 합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시)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의 전제 조건,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의도치 않은 법 위반 가능성이 증대되며 실무상 혼란이 우려

⇒ (건 의) 현장의 다양한 거래관계를 고려한 당사자간 미연동 사유 사례 및 기준, 방식 등을 '가이드북', 'FAQ' 등에 제시

□ (원가정보 제공 관련 근거조항 필요) 위탁기업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 물품의 원재료 비중(원가구성표), 구매가격 및 시기 등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

- 상생협력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

⇒ (건의) 약정 체결 시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

- (허위신고 제재 규정 마련) 수탁기업의 '골탕 먹이기'식 무고성 진정·신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도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위탁기업은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수탁기업과의 모든 협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·보관해야 하는 등 과중한 행정 부담 발생 우려

⇒ (건의) 위·수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등 위탁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규정 마련